

行政區域境界調整및洞名稱變更에 따른 議 會 意 見 聽 取 의 件

의안
번호

437

제출년월일 : '95. 11.
제 안 자 : 안산시장

□ 提案事由

- 안산신도시개발이전 법정리의 경계가 시 승격과 함께 그대로 법정동 경계가 되어 주민불편 및 불만 요인이 되고 있어 생활권이 맞지 않거나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
- 옹진군 대부면이 '94.12.26 행정구역개편으로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상 면의 명칭이 사라지고 법정리만 법정동으로 바뀌어 조상대대로 불리워온 "대부"라는 고유 명칭을 살리고자 동동, 북동, 남동 등 3개 법정동 명칭을 대부동동, 대부북동, 대부남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主要骨子

- 경계조정대상지역 : 6개 지역

연번	편입 되는 지역	편입 받는 지역	현 황		비 고
			면적(km ²)	세대수/인구수	
1	· 성포동 일부 (화림선원부근)	일동(일동)	0.29	1/1	
2	· 일동 일부 (12, 13, 34동)	본오동(본오 2동)	0.39	1,341/3,460	
3	· 성포동 일부 (부곡동도로공원)	부곡동(부곡동)	0.08	-	인구 없음
4	· 이동 일부 (수자원공사부근)	성포동(성포동)	0.28	-	.
5	· 원곡동 일부 (초지동5단지야산)	초지동(초지동)	0.03	-	.
6	· 원곡동 일부 (선부동11단지야산)	선부동(선부 1동)	0.03	-	.

○ 동명칭 변경 대상지역 : 3개 법정동

연 번	현 행	변 경	비 고
1	· 동 동	대부동동	
2	· 북 동	대부북동	
3	· 남 동	대부남동	

□ 調整根據

○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- 제3항 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·분합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(내무부소관)

- 제10항 — 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- 제24호 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·면·동간의 구역변경 승인

□ 參考事項

○ 지명위원회 개최

- 일 시 : '95. 8. 29(화) 17:00
- 장 소 : 시장실
- 참 석 : 6 명
- 내 용 :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심의
- 결 과 : 동동, 북동, 남동의 명칭을
⇒ 대부동동, 대부북동, 대부남동으로 변경 가결

○ 시정조정위원회 개최

- 일 시 : '95. 9. 5(화) 09:00
- 장 소 : 부시장실
- 참석 : 8명
- 내 용 : 행정구역경계조정 및 동명칭변경 심의
- 결 과 : 경계조정 6개 지역 및 명칭변경 3개 법정동 가결

○ 주민의견 조사 실시 결과

- 대상 : 4개 지역

- 경계조정 : 1개 지역, 1,341세대(일동 흥국주유소 아래 - 상록수역앞 일원)
 - 명칭변경 : 3개 지역, 1,613세대(동동, 북동, 남동)

- 조사기간 : '95. 9. 20 ~ 9. 30 (11일간)

- 조사방법 : 우편조사

- 조사결과

- 일동지역 경계조정

- 타당성 판단기준 : 의견조사 참여세대의 50%이상 찬성
 - 조사대상 세대수 : 1,341세대
 - 참여 세대수 : 384세대 (28.7%)
 - 조사결과

- 찬성 : 335세대 (87.2%)
 - 반대 : 44세대 (11.5%)
 - 무효 : 5세대 (1.3%)

- 대부동 동동, 북동, 남동 명칭변경 지역

- 타당성 판단기준 : 의견조사 참여세대의 90%이상 찬성
 - 조사대상 세대수 : 1,613세대
 - 참여 세대수 : 501세대(31.1%)
 - 조사결과

- 찬성 : 473세대 (94.4%)
 - 반대 : 13세대 (2.6%)
 - 무효 : 15세대 (3.0%)